



vol.138

언론중재위원회 NEWS

인론 사람

Special News

언론중재위,
이화여대와 공동 토론회 개최

Interview

한국언론법학회 정재황 회장



12
2011. December

2011. 12

CONTENTS

-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 이화여대와 공동 토론회 개최
- 04 **인터뷰-한국언론법학회 정재황 회장**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06 **위원단상**
독불장군의 쓴 웃음
- 07 **직원마당**
엄마 되기
- 08 **선심위후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애정남
- 09 **기고**
끊이지 않는 설(說), 설(舌)에서 나오는 설(藝)
- 10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글렌 굴드 ‘윌리엄 버드와 올랜도 기번즈의 콘소토 뮤직’
- 11 **이런얘기 저런얘기**
서지초가뜰 - 단아하고 소박한 한정식의 진수
- 12 **위원동정**
- 13 **위원회 소식**
- 14 **위원회 통계 현황**

언론중재위, 이화여대와 공동 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주요 언론조정중재사례를 통해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이란 주제로 11월 30일 이화여대 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박성희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제1중재부 장재운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과 서울제6중재부 김충일 중재위원(전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장재운 부장은 제1발제 주제인 ‘손해배상청구 관련 조정중재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을 맡아 발표했다. 장 부장은 미담성 기사이지만 신원이 노출되어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개인적인 연애문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해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성범죄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 문제된 사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에 사용해서 문제된 사례 등 자칫하면 기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명쾌한 법률 해석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어서 김충일 위원이 제2발제 주제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을 맡아 발표했다. 김 위원은 발제주제에 앞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의 기능설명 및 피해구제 보도문의 유형을 설명했다. 또한 발제주제와 관련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청구된 사례로 정황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실확인이 불충분한 사례, 무리하게 보도방향을 맞추려다 뒤늦게 반론권을 허용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충일 위원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일단 발생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다”며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문 게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현직 기자와 미래의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 언론전공 학생들이 언론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학들과 연계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가 공정한 업무처리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언론피해구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언론법학회 정재황 회장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2012년 회장 취임예정)
프랑스 파리제2대학교 법학 박사

2004년 7급 공무원 A씨는 업무상 횡령사건으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유력 일간지는 공무원 비위에 관한 이 재판을 크게 보도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몇 년 후 A씨의 외동딸과 약혼한 B씨가 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A씨의 이름을 검색하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과거의 기사를 보고 파혼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A씨가 검색을 해보니 벌금형을 받은 1심 결과만 검색되었고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검색사이트 C사에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경우 A씨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지난 11월 5일 한국언론법학회의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언론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출제된 문제다. 동요에서처럼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은 시절이 아니라 초상권 침해로 인해 언론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터넷 언론 등으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모의재판대회를 주관한 한국언론법학회 정재황 회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언론피해구제뿐만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언론분야의 전문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편집자 주)

Q. 한국언론법학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언론법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2001년 고려대 원우현 교수님께서 초대 회장을 맡아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외대 고 김진홍 교수님, 건국대 유일상 교수님,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중앙대 권영설 교수님, 한위수 변호사님을 비롯해 200여명의 회원들이 커뮤니케이션영역에서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원우현 전 회장님께서 사재를 쾌척하시어 마련한 재원으로 언론법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철우언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박용상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이 처음 수상하신 이후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자유에 신장에 기여한 관례를 선정해 매년 공표하고 있고, 특히 학회 학술지인 「언론과 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서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법과 윤리, 정책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물들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Q. 최근 이슈가 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물론입니다. 요즘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IPTV, DMB 등 새로운 형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같이 새로운 매체들은 신속하고 접근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의 참여

를 높이고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의 하나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매체에 의해서는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셜미디어에 의해서는 쌍방향성, 개방성, 상호간 연결성이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기도 하며 정보를 공유합니다. SNS를 통해 관심있는 사안들에 대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지요. 심지어 오늘날 스마트폰은 자아실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Q. 하지만 이런 새로운 매체로 인한 피해구제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SNS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도 나타나지요. 더 성숙한 언론자유를 보호를 위해서, 또 SNS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권과 같은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21조 4항이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SNS의 확산속도와 언론보도만큼이나 큰 파급력을 생각하면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소송을 통한 해결도 필요하나,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에 소송을 대체할 조정제도와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완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용자들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존중하는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유지하도록 이끄는 사전적인 문화교육, 시민교육이 보다 효과적인 피해방지 예방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Q. 지난 11월 국내 최초로 열린 언론법 모의재판대회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학회가 학자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재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상외로 호응이 매우 높아 놀랐습니다. 처음이니만큼 기본적인 법 사고가 갖춰졌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다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논의들을 반영하고 창조적인 법 이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참가한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론법 전문가로서 잠재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양한 법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년 개최하려고 합니다.

니다. 외국의 로스쿨 같은 경우는 조정협상기법도 가르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법률가들도 조정과 중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통해 인문학,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배출된다면 조정 분야도 보다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Q. 법학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장점을 말씀해주신다면?

분쟁은 사전예방과 조정을 통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공법에서는 ADR을 많이 강조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언론분쟁해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 자율규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뒷받침이 필요하죠. 다만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과거에 언론탄압을 하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헌법 10조도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야에 있어서 피해구제의 조기구제와 효율성, 편리성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독립편성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도 뒷받침되어야겠지요. 물론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지만, 준수법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까지도 신장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가 생활 속에서 더욱 꽃피고 만발하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권리위에 잠자지 않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다매체, 다플랫폼 시대의 언론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도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법학회도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조화와 발전적인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열심히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법학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정리 및 사진 / 남승균(홍보팀)

Interview

독불장군의 쓴 웃음



권 일

서울제2중재부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근 검찰과 법원의 '선재성 판사 사건'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입맛이 씹쓸했다. 언론이 앞장 선 여론이나 사법부의 결정이 내 생각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들면서 여론이나 사회 정의와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판단력이 떨어져 혹시 독불장군이나 사회불만세력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잠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선 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법정관리하던 기업에 고교 동창인 변호사를 추천하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2억원을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 죄명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였다. 그러나 1심인 광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광주고법의 재판은 믿을 수 없다'며 관할이전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맡도록 결정한 것이 사건의 개요다.

이 사건은 현직 간부 법관이 연루된 터라 이목이 집중됐지만 수사 초기부터 말썽도 많았다. 선 판사가 광주 전남 지방에서만 19년간 근무해 온 이른바 향판(鄕判)이었기 때문이다.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선 판사는 계속 그 지역에서 법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11건이 잇달아 기각된 것도 이례적이었다.

예상대로 1심인 광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나름대로 법이론을 구성하기는 했지만, 얼핏 보기에라도 무죄 논리는 궁색하고 상식적으로도 정당성이 떨어져보였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여론은 들끓었고 언론은 일제히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이 항소심 관할 이전신청을 내자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언론은 사실과 칼럼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서울로 옮긴 것은 잘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검찰과 법원이 잘했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여론을 의식한 꼼수고 죽을 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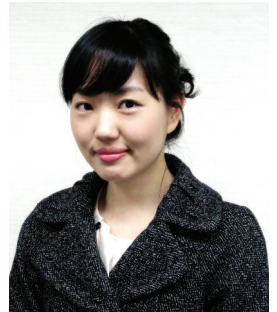
고 오히려 욕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칭송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다 좋아할 것은 아니다. 차라리 이런 변칙 처리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원칙이 있고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버젓이 있는데도 초유의 비상사태처럼 처리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지 의문이고 피해는 결국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면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밟아 바로잡아야 했다. 광주고법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1심 재판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광주고법은 사건을 자신있게 머리 들고 처리할 수 있을까. 언론이나 여론의 순간적인 질타가 두려워 대법원까지 눈썹에 불은 불만 끄겠다고 한다면 법률을 다룰 것이 아니라 정치판에 나가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대다수 법관들의 침묵이다. 걸핏하면 '연관장을 돌린다', '법관회의를 소집한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인터넷에 불만을 쏟아내지 않았던가. 한 사람의 법관 인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법관들이 이번에는 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지 궁금하다. 보수냐 진보냐의 다름보다 '선 판사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과 법원의 기회주의적인 눈치보기가 나에게서는 훨씬 심각하고 충격적이었다. '선 판사 사건'의 법관 비리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일지 모르지만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검찰과 법원의 태도는 법조인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사법부가 여론을 의식해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일시적으로 여론이 지지한다고 희희낙락할 일은 더욱 아니다. 여론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훨씬 덜 위험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렇지만 언론 매체들은 '선 판사 사건'을 대법원이 잘 처리했다고 호들갑이고 여론도 모처럼 사법부에 호응하는 분위기이니 오늘도 나는 혼자 뒤돌아서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엄마 되기



김 정 연
예산회계팀

“결혼하면 철든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말을 “결혼하면 철이 조금 들고, 아기를 낳으면 철이 조금 더 든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결혼 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라면 명절에 다른 사람들처럼 귀성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되니 예전과 다른 변화가 느껴졌다. 전에 나는 임신에 대해 아주 안 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되듯, 그저 당연히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먼저 임신한 주위 사람들이 “물에도 냄새가 있고 선풍기 바람에도 냄새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넘겼는데, 막상 아기를 갖고 보니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낄름보다 순탄히 입덧 기간을 넘겼지만 그런 나에게도 이런저런 냄새와의 싸움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임신 기간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하나의 생명이 쉽게 탄생되지는 않는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유모차 브랜드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다 대부분 외국산이라 이름 외우기조차도 쉽지 않다. 유모차는 빙산의 일각이다. 방대한 유아용품 시장을 일일이 파악해 꼼꼼히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도 임신과 육아에 대한 사이트로 바뀌고, 꽤 많은 양의 관련 서적도 구입해 부지런히 읽고 태교도 열심히 하며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자제했다. 그런데 어느새 집에 가면 동화책 한 줄을 읽기 보다는 인터넷 서핑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평소에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꺼리던 인스턴트 음식이 입덧 기간에 더 당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임신한 친구들은 영어 태교다 손가락 태교다 하면서 배냇저고리도 손수 만들던데 나는 엄마 마음이 편해야 아기도 편하다는 나름의 지론을 내세워 그저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마음 편한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움직이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기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임신

이라고 했을 때 남편과 나는 너무도 기뻐다. 아무것도 안 보이던 초음파 화면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기의 심장 뛰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초음파를 보러 가는 날이면 뱃속의 아기에게 ‘많이 움직여줘요’ 하며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하기도 한다. 어디가 얼굴인지 잘 분간도 되지 않는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하며 조금이라도 활발히 움직이면 운동선수를 시켜야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팔벌출 부모가 되기도 한다.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면서 움직이는 일이 힘들고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어디에 가더라도 임신부라고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 임신 기간을 잘 지낼 수 있었다. 며칠 전에 퇴근길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데 노인 한 분이 타시더니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일어나라고 하셨다. 그 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임신부한테 왜 일어나라고 하느냐고 편을 들어 주시자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임신부인 줄 몰랐다고 하시며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날은 그분들의 호의를 편안히 받아들였다.

가족의 생활 패턴도 어느 순간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맞춰지게 되었다. 아기를 돌봐주시기로 한 부모님은 각종 육아 관련 서적을 읽으시며 손주가 지낼 공간 마련에 분주하시다, 즐겨보시는 TV프로그램도 육아 관련 프로그램으로 바꾸셨다. 남편의 퇴근 후 첫 마디도 “오늘 잘 보냈어?”에서 “꿈이(아기의 태명)는 잘 있었어?”로 바뀌었다. 아직 출산이라는 커다란 산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출산 후기들을 읽어보면 겁이 나기도 하지만, 심호흡을 하며 출산이라는 산을 순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용기를 내보기도 한다. 임신 기간 동안 아기의 존재를 느끼며 기쁘기도 했고, 주변에서 모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아기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것에 감동받기도 했다. 다시 임신부가 아닌 워킹맘이 되어 이런저런 육아 고민에 휩싸이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보내온 열 달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나를 조금 더 철들게 해준 ‘꿈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애정남

김 정 민
기사심의팀

“이럴 때 참 애매~하죠. 잉. 우리끼리는 이렇게 딱 정하는 겁니다~잉.”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가 등장한다. 세상사 모든 일이 그의 대답처럼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이요, 점심메뉴 하나에도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 애정남도 해결하지 못할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하다.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대한민국 수도의 행정을 책임질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민의 관심사였다. 선거에 임박할수록 정당과 후보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 수위도 점차 높아졌다.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어느 날 A신문에 B후보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외부 기고가 실렸다. 그리고 다음날에도 A신문은 B후보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며칠 후에는 B후보를 ‘종북 좌파’라고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논평과 B후보의 국가관과 도덕성

에 대한 자질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사설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결정문 게재를 결정했다. 그러자 A신문은 언론사의 사실과 논평을 선거기사심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정당의 정당·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나 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는 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 모두가 해당된다. 즉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일반 기사뿐만 아니라 내·외부 필자의 기고나 사설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미국과 같이 언

론사가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반대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담은 공론의 장으로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다면 언론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도 그 이유는 언론사의 후보 지지를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사의 경영으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일반 기사에까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보수언론, 진보언론과 같이 정치적 성향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을 제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느 수준까지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지 애정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달의 책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왜 소유권이 문제인가?

C. 에드윈 베이커 지음 | 남궁협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종편의 도입과 함께 미디어 소유 집중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한차례 오갔다. 하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어느덧 종편시대의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다. 종편시대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미디어 집중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오히려 주춤하는 듯 하다.

펜실베이니아 법과 대학 교수인 C. 에드윈 베이커는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 왜 소유권이 문제인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는 언론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미디어 소유 구조가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미디어 소유 집중 추세가 자본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왜 미디어 소유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

베이커는 ‘언론시장의 구조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왜 중요한가’를 밝히고, 언론의 소유 집중에 반대하는 근거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해결방안들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내고, 언론의 소유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미디어 소유구조와 언론의 자유라는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 통찰력은 물론 우리 사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꿈이지 않는 설(說), 설(舌)에서 나오는 설(褻)



이 미 혜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

11월 14일, 인터넷은 또 한 번 말로 시끄러워졌다. 톱스타 이효리씨가 사망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한 네티즌이 말장난으로 올린 한 게시물 글이 SNS를 따라 이말 저말이 덧붙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다행히 이효리씨 본인이 SNS를 통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망설을 퍼뜨린 거냐며 직접 반박을 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런 해프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몇 년 전 연기자 변정수씨 역시 사망설로 홍역을 치렀다. 변정수씨는 가족까지 연루되어있는 자신의 사망설을 듣고 그 후로 인터넷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언론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가수 나훈아씨는 악성루머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의 무고함을 해명하고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서슴없이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 이런 설(說)은 그다지 기상천외한 일이 아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요즘,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류도 다양하다. 단순한 열애설에서부터 게이설, 조폭 연관설, 낙태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고인 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설(舌)의 위력은 가히 대단하다. 그러나 이젠 이런 설들을 단순한 흥미를 위한 이야기거리로만 치부하기엔 도를 지나친 것 같다. 물론 연예인들은 대중에게 공개된 사람들이기에 사생활의 공개범위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넓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설픈 의혹이나 터무니없는 추측에서 비롯된 말이 사실로 돌변해 비난과 논란의 화살로 돌아오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설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삶과는 다른, 비밀에 둘러싸인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더욱 그러하다. 당사자나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것이라 함부로 추측하거나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재미까지 더해지니 확산이 더더욱 빠르다. 하지만 그 결과 당사자는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설(說) 즉, 루머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IP 추적을 통한 고소가 몇 차례 실행된 적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또한 강력한 조치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정책이 제안되었지만 이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무산되었다. 과연 최선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나는 법적인 제도에 앞서 네티즌인 우리들이 앞장서서 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상의 소셜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이다. 실명공개를

통해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제도보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자발적인 개선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신호등이 파란 색일 때는 건너고 붉은 색일 때는 멈춰야 하듯, 인터넷 상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러하다는 것. 서로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는 '역지사지'의 자세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할 때에 우리 사회 역시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본 기고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트위터와 페이스북 기고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글렌 굴드

‘윌리엄 버드와 올랜도 기번즈의 콘소트 음악’

스티브 잡스가 타계하고 흥미롭게도 인터넷에는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10장의 앨범(Steve Jobs’ 10 Favorite Records)’이라는 기사와 목록이 떠돌았다. 그 목록에 밥 딜런(Bob Dylan)의 「Highway 61 Revisited」를 시작으로 존 레논의 「Imagine」을 비롯해서 그레이트풀 데드, 잭슨 브라운, 피터 폴 앤 매리, 롤링 스톤즈, 더 후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사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선호 목록은 아니었다.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의 키노트에서 유추해낸 목록이었는데, 그가 키노트도 절대 허투루 만들진 않았으리라는 믿음에 기초해 재구성해낸 목록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사후에 많은 것이 신화화되고 있는 마당에 그가 좋아했던 10장의 앨범 목록에 대한 그럴듯한 분석들도 함께 기사화되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가 젊은 시절에 즐겨들었던 음악의 목록 이상으로 보인 않았다. 시대의 명반으로 추앙받을 만한 훌륭한 것들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창조적인 CEO로 평가받는 사람치고는 보수적인 취향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 20대 이후로 그는 음악을 듣는데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눈길을 끄는 음반이 하나 있었다. 캐나다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Glenn Gould)가 남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The Goldberg Variations)」이었다.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이 음반은 스티브 잡스가 말년에 즐겨 들었던 것이라고 한다.

클래식 음악에서 글렌 굴드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베스트 셀러이고 바흐로 입문하는 음반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글렌 굴드는 스티브 잡스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14세에 데뷔하여 천재 연주가로 이름을 날렸고, 1955년 6월에 당대에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음반으로 데뷔하여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1964년 이후로는 연주 은퇴를 선언하고 스튜디오로 들어가 레코딩에만 몰두했다. 굴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은 공연장 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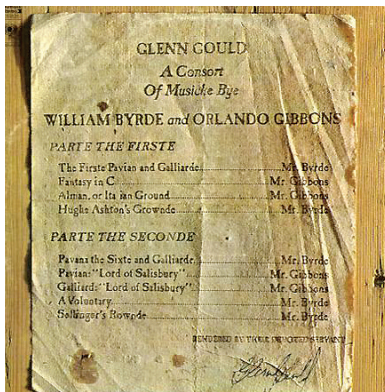
완벽하게 통제된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통해 작곡가의 영혼과 직접 대면하고 싶어 했다. 굴드는 1981년 자신의 데뷔 레코딩이었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재녹음했는데, 이것은 그의 마지막 녹음이 되었다. 따라서 굴드하면 많은 사람들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그의 처음이자 동시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글렌 굴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따로 있었다. 17세기 영국의 작곡가인 기번즈(Orlando Gibbons)가 그 주인공이다. 굴드가 생각하기에 한 시대의 마지막을 기번즈보다 잘 드

러내는 작곡가는 없었다. 기번즈는 무명 혹은 익명의 작곡가들이 활동하던 르네상스 시대와 특별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재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던 바로크 시대, 다시 말하면 신의 대리인으로서 계시와 같은 직관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태어나서 천재적 개인에 의해서 성취된 진리가 대접받는 시대에 걸친 인물이었다. 굴드는 그런 기번즈의 음악에서 특별한 영감을 받았던 것 같다.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서부터 쇤베르크에 이르기까지, 불후의 명성을 가진

작곡가들의 음악도 즐겨 연주했지만, 그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무명(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개인으로 자각하기 시작한) 작곡가의 음악이었다.

굴드는 당대에 말러와 슈트라우스와 같은 관계였던 기번즈와 버드(William Byrd)의 작품을 한 장에 담아 녹음했다. 바흐의 음반에서도 그렇지만 피아노를 마치 하프시코드처럼 연주하는 굴드의 개성적인 터치와 음색은 일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음반은 음악이 스며든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신비롭게 들린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해줄 수 있는 계시적인 음표를 받아쓰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성을 시작한 작곡가 개인의 정서도 함께 머금고 있는 느낌이다. 굴드가 가장 아꼈던 기번즈와 버드의 작품을 담은 이 음반이 스티브 잡스의 목록에 있었다면 더 그럴듯하지 않았을까.



서지초가뜰 - 단아하고 소박한 한정식의 진수

구울화팀장

기획팀

교불교불 흠길기 끊어질 듯 이어진다. 이 길로 가면 정말 식당이 나오기는 하는 걸까. 미심쩍은 마음에 택시 기사에게 물었더니 걱정 말고 잠자코 기다리란다. 아마도 이 집을 찾는 승객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을 했던가보다. 과연 조금 더 들어가니 양지바르고 아늑한 골짜기에 웅기종기 모여앉은 초가집이 몇 채 보인다. 창녕 조씨의 집성촌인 '서지마을'이다. 예부터 마을의 모양이 마치 쥐가 차곡차곡 쌀을 모아 보관하는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서지초가뜰"은 "서지골의 초가집 뜰"이라는 뜻으로 창녕 조씨 종가의 고택이자 종가의 전통음식을 계승 전수하기 위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정한 전통음식 1호점이기도 하다. 주위를 둘러보니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한옥을 감싸 안았고 그 뒤로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앞으로는 꽤 넓은 논이 펼쳐져 있다. 풍수에 밝지 않은 사람이라도 넉넉하고 풍족한 좋은 터임을 느낄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보니 <서지>의 서(瑞)는 상서롭다, 길하다는 뜻이니, 마을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

메뉴에는 못밥(동네 사람들이 모여 모내기 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려주는 상) 과 질밭(김매기가 끝난 뒤 차려주는 상), 생일상 등



이 있다. 우리가 주문한 것은 "손님상". 전주나 담양 등 남도의 한정식처럼 한상 떡 벌어지게 나오겠거니 생각했지만 상을 대하니 수목담채화처럼 단출하고 소박하다. 메뉴는 미역국, 문어숙회, 각종 나물과 고추부각, 아채 튀김, 생선 구이, 명태포식혜 등등. 매일 집에서 차려먹는 건 아니지만, 마음먹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부엌에서 차려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튀는 음식 하나 없이 모두 골고루 간이 딱 맞는다.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으며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도 정성이 가미된 음식들. 손 가는 음식 한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른 반찬들이 뒷받침하는 여느 한정식 집과 비교해, 몇 되지는 않으나 음식 하나하나가 밥상의 주인인 느낌이다.

좋은 음식에 좋은 술이 빠질 수 없는 법. 300년 동안 내려온 전통 비법으로 빚어진 송죽두견주(松竹杜鵑酒)는 말 그대로 솔잎, 솔방울, 대나무잎, 진달래꽃 등으로 술을 내린 것이다. 은근하고 시원한 향이 먼저 코를 자극하고, 달콤쌉싸름하게 목으로 넘어가며 끝맛은 개운하다. 다만 막걸리보다 도수가 세다고 하니 맛있다고 훌쩍훌쩍 먹다가는 뒷일을 감당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든 분을 꼭 한번 뵈고 싶었으나, 창녕 조씨 9대 종부이신 주인장은 "종가 명가 음식전시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셨다. 서지초가뜰은 "사위 첫 생일상"을 출품했다고 한다. 과연 이 덕의 음식은 이름 그대로 처음 맞이하는 사위의 생일상에 어울리는 정성과 낭만이 느껴진다. 아마도 시골벽적하면서도 쓸쓸한 도시의 일상에 유난히 지치는 날이면 서지초가뜰의 음식이 생각날 것 같다. 그건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상하면서도 너그러운 우리 어머니의 맛이니 말이다.

『술문화』
유대식

자네들 "신말주"라고 들어는 봤나? 그 분이 남기신 것 중에 "십로계첩"이라는 위대한 유물이 있다네.

十老契帖
권라북도 유형문화재 142호

신말주
안동에서 기원한 신말주와 동정어와 관련된 유물

이러한 자리는 폭 술과 술상이 남지한 지경에 이르도록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치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경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결국은 넘어지고 토하여 예를 더럽히는 길이 된다.

심로계첩 중 일부 발췌.

어때? 죽이지? 멋지지?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싸우고 아주 가관이야! 풍류를 몰라!! 얼마나 세련되고 기품있는 말이나? 무려 500년 전 어르신 글이야! 부끄러운 줄 알면 반성하고 배우고 실천해 제발 좀!!

구구절절 좋은 말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성숙하고 멋진 술 문화로 한해의 마무리를 더욱 빛내보자.

이 형님의 주옥같은 말씀에 감동했네요! 어서 먹고 죽자고!

그러니까 어서 집에 보내줘! 이 부끄러운 부장!

CARTOON

COMMISSIONERS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연 외

권성 위원장은 11월 1일 서울대학교 법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의와 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리고 권 위원장은 11월 8일 사법연수원을 방문해 '도덕위험(Moral Hazard)론'에 대해 강연했다. 위원회의 기능과 언론중재제도의 절차를 소개로 강연을 시작한 권 위원장은 법에 따른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법률과 그에 따른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차기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출



김정탁 위원(서울제6중재부,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0월 15일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언론학회 39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위원은 2012년 10월에 취임하여 1년간 언론학회를 이끌게 된다.

▶ '100인 청년리더와의 대화' 토론회 참석



윤덕우 위원(대구중재부,구미1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11월 11일 새나라복지포럼이 주최한 '100인 청년 리더와의 대화'에 청년지도자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실업, 반값등록금, 출산장려 등 청·장년층이 겪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YTN 문화소식 인터뷰



김덕모 위원(광주중재부,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YTN 문화소식보도의 인터뷰에 참여했다. 김 위원은 전남지역을 알리는 영화가 잇따라 개봉되는 것에 '지역가치를 높이고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YTN

▶ 제26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개최 외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11월 14일 '제26회 법조인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래머 한해원(3단), 김효정(2단)과 지도대국을 벌였다. 한편 위 위원은 10월 24일 '성년후견법률지원위원회'를 발족해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관의 후견·감독인으로서 법률상담, 법률자문 및 교육 등 법률지원활동을 하기로 했다.

▶ '디스커버리 제주포럼' 참석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1월 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주최 '디스커버리 제주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 위원은 제2주제인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의 로컬현황과 전략'의 토론에서 한국고유의 가치를 알리는 데 한국의 자연 다큐멘터리나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의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기부교류협약 체결



©충청일보

최병준 위원(충북중재부,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은 11월 2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북 교육사랑운동 선포식 및 교육기부교류 협약식'에 참석해 충북도교육청과 교육기부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충북 교육사랑운동'은 교육자원이 필요한 충북 지역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재능이나 교육을 기부하는 교육문화형성운동이다.



영동지역 간담회 개최



위원회는 11월 11일 강릉에서 강원 영동지역 언론 현황을 파악하고 언론중재 제도를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함종식 중재부장(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을 비롯해, 영동지역 언론사 대표로 김운경 강원일보 영동총지사장, 윤석훈 KBS강릉방송국장, 배재우 CBS영동방송본부장, 서기철 KBS원주방송국장 등이 참석했다.

외부 강사 초빙 강의 실시



위원회는 11월 18일 이성룡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대표)를 초빙해 중재위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언론과 손해배상'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이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부서 판사로서 그간의 실무적인 경험과 축적된 사례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민·형법에 따른 언론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수유 및 여성 휴게시설 마련



사무처는 12월 1일 여성사원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갖췄다. 휴게실에는 임신부 휴게시설과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육아를 위한 여직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종료

2011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8월 27일 출범 후 9차례 회의를 가진 뒤 11월 25일 종료됐다. 이번 심의 기간에는 자체 심의 24건, 시정요구심의 2건, 재심청구 1건으로 총 27건의 선거기사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연탄 전달 봉사활동



권성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은 11월 19일 봉사단체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와 함께 서울 성북구 북정마을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서울시청 봉사단, 경복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4,000장의 연탄을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위원회 노동조합, 마리아의 집 봉사활동



위원회 노동조합은 11월 26일 강원 춘천의 미혼모 보호시설인 '마리아의 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조합원들은 주변 환경정리 및 내부 미화 작업을 돕고 미혼모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마리아의 집은 미혼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과 아기를 보호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무료 미혼모자 시설이다.

2011년 11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2011. 1. 1 ~ 11. 20 기준)

위원회는 11월까지 모두 1,932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610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97건(동의 57건, 이의 36건, 계속 4건), 조정불성립결정 214건, 기각 39건, 각하 12건, 취하 891건(606건), 계류 69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0.4%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536건, 인터넷뉴스서비스 464건, 방송 204건, 뉴스통신 54건, 잡지 8건,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월까지 모두 102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는 96건의 중재결정을 내렸고 6건은 취하되었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 리 결 과										성 공 및 구 제 율		
		조 정 성 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조 정 성 공 률	본 안 성 공 률	피 해 구 제 율
			동 의	이 의	계 속				심 리 전	심 리 중				
1,932	1,298	610	57	36	4	214	39	12	514(373)	377(233)	69	72.7%	83.5%	70.4%

※ ()안의 숫자는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조정성공률=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 본안성공률=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 피해구제율=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신청접수 후 심판정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중재신청 처리현황〉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취 하	계 류
102	96	0	0	6	0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총 57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 공개 29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25건, 사생활 침해 2건, 피의자 신원공개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36건, 일간지 14건, 뉴스통신 5건, 주간지 2건이다.

● 2011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는 선심위가 발족된 8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9건, 여론조사 보도 요건 위반 15건 등 24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4건, 주의사실 게재 3건, 주의 15건, 권고 2건을 결정하였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2건이 접수되어 1건은 취하되었으며, 다른 한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 상담 현황 (2011. 10. 21 ~ 11. 20 기준)

언론중재위원회는 11월 한 달 간 217건의 상담(중복상담 포함)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상담 예정 30건, 타기관 안내 23건, 법적절차 안내 9건, 자체종결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55건, 인터넷신문 54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17건, 주간신문 14건, 뉴스통신 10건, 잡지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11월 20일 현재 152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53건, 언론사 36건, 인턴십 프로그램 19건, 지자체 14건, 대학 12건, 공·사기업 9건, 법무 수습교육 3건, 기타 6건 등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 포털 등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